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505
----------	-----

提出年月日 : '95. 4.

提出者 : 大田廣域市長

1. 提案理由

駐車場法 및 同法施行令에서 市長에게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을 地域特性에 따라 彈力的으로 訂하여 效率的인 駐車場 業務를 推進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公營有料駐車場 管理 受託者 選定時 非營利公益法人을 除外한 法人 또는 個人의 경우 再契約時는 隨意契約이 可能토록 하고자 함(안 제6조 제3항)
- 나. 建築物 附設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基準 緩和에 대한 規定은 現行 駐車場法 施行規則 第11條 規定에 明示되어 있어 關聯 條項을 削除코자 함(안 제18조와 5)
- 다. 公營駐車場 駐車料金 徵收 單位를 現행30分에서 15分 單位로 하고 同時에 料金調整과 급지를 2등급에서 3등급지로 細分코자 함(안 별표1)
- 라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을 強化(안 별표2)

3. 參考事項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 9. 5, 94. 5. 26>

②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2. 9. 5>

1.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균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2. 9. 5>

1. 차로 : 50룩스이상

2.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 : 20룩스이상

④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4. 5. 26>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주 차 형 식	차 로 의 너 비
평 행 주 차	3.0
직 각 주 차	6.0
60도 대 향 주 차	4.0
45도 대 향 주 차	3.5
교 차 주 차	3.5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때에는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3. 주차대수 4대이하의 주차단위 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 또는 곡선부분의 구분 없이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4조 제2항(주차요금의 징수등)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3항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만, 의례식장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의례식장등의영업허가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비영리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재계약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5를 삭제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중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수탁료의 징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점용료”를 “수탁료”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2 시 간 까 지 (1구획 15분기준)		2시간 초과 (1구획 15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기주차권(월)	
	최초15분	15분초과후 매15분이내			주 간	야 간
1 급 지	400	300	600	8,700	104,000	69,000
2 급 지	300	200	400	6,500	72,000	43,000
3 급 지	200	100	200	2,000	36,000	22,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가. 4월~10월 08:00~20:00
 - 나. 11월~ 3월 09:00~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광역시장이 지정하되 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주차요금은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을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9.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본인명으로 등록된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5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5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3조 관련)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 호텔, 휴양, 콘도미니 엄	2개실당1대+부대운동시설 물별산정대수+기타부대 시설면적 30㎡당 1대	-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의료 시설	중 합 병 원	2병상당1대로 산정된 대수 와 시설면적10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대수	-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운 동 시설	골 프 장	1홀당 10대	-
	골 프 연 습 장	2타석당 3대	-
	육 의 수 영 장	정원 10인당 1대	-
	기 타	상업지역:시설면적120㎡당 1대 일반거주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시설면적180㎡ 당 1대 기타지역:시설면적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8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관 략 집 회 시 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
	예 식 장	시설면적 40㎡당 1대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80㎡당 1대 기타지역:시설면적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운 수 시 설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	시설면적 100㎡당 1대	면적10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시설면적120㎡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시설면적150㎡ 당 1대 기타지역:시설면적당20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판 매 시 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당 1대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상업지역인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위 락 시 설	유 흥 음 식 점	시설면적 60㎡당 1대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80㎡당 1대 기타지역:시설면적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400㎡미만인시설물
업 무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80㎡당 1대 기타지역:시설면적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종교시설, 전기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2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단독주택	건축면적200㎡이하는 1대 건축면적200㎡초과의 경우 는 1대에 200㎡ 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면적 130㎡당 1대	130㎡미만인 건축물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 는 면적600㎡미만인 시설

신 구조 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적용범위) 이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례식장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의례식장 등의 영업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조 (적용범위) ----- ----- (삭제)</p>	<p>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비영리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재계약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p>	<p>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비영리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 재계약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p>	<p>제18조의 5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완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다음 각호를 같이 한다.</p> <p>1. 주차부분의 장. 단변중 1번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p> <p>2.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되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장을 설치시는 해다도로 (보. 차도 구별이 없는 도로에 한한다) 폭만큼을 차로의 너비로 활용할 수 있다.</p>	<p>(삭제)</p>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주 차 형 식	차 로 의 너 비											
	출입구가 2개이상시	출입구가 1개시										
평 행 주 차	3.3	4.5										
직 각 주 차	5	5										
60도 대형주차	4	5										
45도 대형주차	3.5	4.5										
교 차 주 차	3.6	4.5										
3. 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징수관리 수탁자의 지도감독 2~7(생략)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1. ----- 수탁료의 징수 ----- ----- 2~7(현행과 같음) ② ----- 수탁료등의 ----- -----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분	2시간까지 (1구획30 분기준)	2시간초과 (1구획30 분기준)	1일주정기주차권(월) 차 권		구 분	2시간까지 (1구획 15분기준)	2시간 초과 (1구획 15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기주차권(월)			
			주간	야 간		최초15분	15분초과후 에15분이내		주간	야 간		
1급지	500	1,000	8,000	104000	69000	1급지	400	300	600	8,700	104,000	69,000
						2급지	300	200	400	6,500	72,000	43,000
2급지	200	400	3,200	41600	27700	3급지	200	100	200	2,000	36,000	22,000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비교]</p> <p>1~9 (생략)</p> <p>10 주차시간의 3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한다</p> <p>11 (생략)</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 관련)</p>	<p>[비교]</p> <p>1~9 (현행과 같음)</p> <p>10 -----15분-----15분</p> <p style="text-align: center;">으로 한다</p> <p>11 (현행과 같음)</p>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 관련)</p>				
구 분	주차장설치의무연면적의하하선	주차대수1대의산출기준면적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량 제외시설물
<p>숙박시설(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니임은제외한다)의료시설(종합병원은제외한다)</p>	<p>상업지역은120제곱미터</p> <p>상업지역외의지역은300제곱미터</p>	120제곱미터	<p>숙박시설</p> <p>기 타</p>	<p>2개실당1대+부대운동시설 몰별산정대수+기타부대 시설면적 30㎡당 1대</p> <p>시설면적 120㎡당 1대</p>	<p>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p>
위 락 시 설	.80제곱미터	80제곱미터	<p>의 료 시 설</p> <p>기 타</p>	<p>2병상당1대로 산정된 대수 와 시설면적10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대수</p> <p>시설면적 120㎡당 1대</p>	<p>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p>
근 린 생 활 지 역	<p>상업지역은150 미터</p> <p>상업지역외의 지역은300제곱 미터</p>	150제곱미터	<p>공 포 장</p> <p>공 포 연 습 장</p> <p>목 의 수 명 장</p> <p>운 동 시 설</p> <p>기 타</p>	<p>1용당 10대</p> <p>2타석당 3대</p> <p>정원 10인당 1대</p> <p>상업지역:시설면적120㎡당 1대 일반거주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시설면적180㎡ 당 1대 기타지역:시설면적200㎡당 1대</p>	<p>-</p> <p>-</p> <p>-</p> <p>상업지역의 경우 면적8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	운동경기관합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					
		에	시설면적 40㎡당 1대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김	기	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8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기타지역:시설면적150㎡당 1대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운	수	기	타	공방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	시설면적 100㎡당 1대	면적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시설면적120㎡당 1대	상업지역외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관	비	시	설	기	타	체육장, 소빙센타	시설면적 60㎡당 1대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시설면적 80㎡당 1대	상업지역인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위	학	기	타	유통음식점	시설면적 60㎡당 1대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8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400㎡미만인시설물			
	업	무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6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기타지역:시설면적100㎡당 1대	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충	교	시	설	기	타	참고시설, 전기시설, 통신행정시설, 참고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2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시설물	
	단	독	주	택	건축면적200㎡이하는 1대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초과하는 150㎡당 1대를 미한 대수									
공	동	주	택	건축면적 130㎡당 1대	130㎡미만인 건축물				
기	타	건	축	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300㎡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600㎡미만인 시설			